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0호 2023. 3. 15.(수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5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3-5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5
- 하동군 고시 제2023-6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6
- 하동군 고시 제2023-61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7
- 하동군 고시 제2023-62호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입주희망자 채모집 10
- 하동군 고시 제2023-6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36
- 하동군 고시 제2023-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7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317호 「하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8
- 하동군 공고 제2023-355호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5
- 하동군 공고 제2023-371호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1
- 하동군 공고 제2023-37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58
- 하동군 공고 제2023-385호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65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303호 20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71
- 하동군 공고 제2023-306호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81
- 하동군 공고 제2023-326호 2023년 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91
- 하동군 공고 제2023-354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96
- 하동군 공고 제2023-366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105

회									
담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3 - 5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96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 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103-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96		20230228	2007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726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72		20230228	20070618	중도라는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474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청학로 106-39		20230228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599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54-27		20230228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70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33		20230228	20090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행정리명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23-5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3. 02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23
2. 허가연월일 : 2023. 03. 02.
3. 점·사용의 목적 : 자연순환시설(고물상)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65-20번지 , 130㎡
5. 점·사용의 기간 : 2023.03.02. ~ 2028.03.0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806-10

하동군 고시 제2023-6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3. 02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24
2. 허가연월일 : 2023. 03. 02.
3. 점·사용의 목적 : 진 · 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770-4번지 , 6.6㎡
5. 점·사용의 기간 : 2023.03.02. ~ 2028.03.0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12 105동 401호

하동군 고시 제2023-61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3 . 03 .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 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 재 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X	Y					
명칭	번호	위도	경도								
지적도근점	W4576	35-07-53.6429	127-51-36.5535	중부	282029.87	278396.97	228.723	북천면 서황리 1268	2023.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7	35-07-49.5951	127-51-39.3388	중부	281905.73	278468.57	227.651	북천면 서황리 산200-3	2023.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8	35-07-46.0944	127-51-40.0847	중부	281798.00	278488.39	218.142	북천면 서황리 산200-3	2023.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79	35-07-44.9141	127-51-42.3011	중부	281762.11	278544.82	218.623	북천면 서황리 1249-3	2023.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0	35-07-43.1808	127-51-38.3561	중부	281707.83	278445.40	202.989	북천면 서황리 산221	2023.02.01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1	35-07-38.7987	127-51-38.9059	중부	281572.90	278460.49	199.046	북천면 서황리 산200-5	2023.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2	35-07-34.8488	127-51-33.6979	중부	281450.03	278329.67	182.954	북천면 서황리 1177	2023.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3	35-07-32.6077	127-51-34.7991	중부	281381.20	278358.15	180.013	북천면 서황리 산197-2	2023.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4	35-07-26.3281	127-51-34.0768	중부	281187.52	278341.53	177.570	북천면 서황리 1381	2023.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5	35-02-08.6282	127-49-19.3024	중부	271367.73	275009.72	46.144	고전면 성천리 산73	2023.02.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6	35-02-10.4429	127-49-21.5078	중부	271424.12	275065.16	55.794	고전면 성천리 595	2023.02.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7	35-02-13.7517	127-49-23.3804	중부	271526.48	275111.79	62.618	고전면 성천리 596	2023.02.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588	35-14-08.1739	127-53-14.6691	중부	293594.34	280778.06	77.414	옥종면 두양리 170-3	2023.0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89	35-14-11.5077	127-53-13.2645	중부	293696.77	280741.63	77.454	옥종면 두양리 150-1	2023.0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0	35-14-10.3350	127-53-05.2105	중부	293658.81	280538.30	79.590	옥종면 두양리 547	2023.0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1	35-08-50.9898	127-43-16.8097	중부	283696.71	265731.66	138.206	악양면 신성리 1296	2023.0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2	35-08-50.5391	127-43-18.1724	중부	283683.07	265766.25	141.995	악양면 신성리 1296	2023.0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3	35-08-50.7345	127-43-20.6343	중부	283689.54	265828.52	149.737	악양면 신성리 산81-12	2023.0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4	35-06-55.9530	127-50-19.9528	중부	280235.39	276472.56	309.206	북천면 방화리 1009	2023.02.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5	35-06-55.3312	127-50-23.4158	중부	280216.97	276560.42	291.164	북천면 방화리 1009	2023.02.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6	35-06-55.5769	127-50-26.6226	중부	280225.23	276641.56	269.343	북천면 방화리 1009	2023.02.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7	35-11-46.6683	127-52-15.0064	중부	289219.91	279307.66	85.586	옥종면 월횡리 48-4	2023.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8	35-11-49.5913	127-52-18.0196	중부	289310.66	279383.10	85.504	옥종면 월횡리 28-2	2023.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599	35-11-54.3893	127-52-22.1187	중부	289459.44	279485.50	87.018	옥종면 월횡리 4-9	2023.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0	35-14-27.9476	127-42-40.9330	중부	294074.75	264749.20	674.689	청암면 묵계리 산270-1	2023.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1	35-14-27.9105	127-42-44.8469	중부	294074.31	264848.16	667.272	청암면 묵계리 1665	2023.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2	35-14-25.0263	127-42-46.5278	중부	293985.73	264891.30	655.956	청암면 묵계리 산274-1	2023.02.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3	35-00-44.2717	127-53-25.9472	중부	268821.65	281284.81	77.406	진교면 고통리 산55-3	2023.02.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4	35-00-43.5593	127-53-29.5028	중부	268800.50	281375.16	64.523	진교면 고통리 723-6	2023.02.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5	35-00-39.1643	127-53-37.2944	중부	268666.82	281573.93	63.075	진교면 고통리 762	2023.02.10	PVC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6	35-09-39.2766	127-52-30.5955	중부	285297.29	279736.59	173.670	옥종면 정수리 산4-1	2023.02.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7	35-09-39.6045	127-52-32.8533	중부	285307.90	279793.64	172.480	옥종면 정수리 산4-1	2023.02.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8	35-09-37.6667	127-52-35.5630	중부	285248.78	279862.75	161.033	옥종면 정수리 산4-8	2023.02.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09	35-10-36.3107	127-52-10.0816	중부	287050.47	279202.04	121.988	옥종면 청룡리 1017-1	2023.02.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0	35-10-35.3265	127-52-07.2880	중부	287019.52	279131.61	132.771	옥종면 청룡리 511-1	2023.02.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1	35-10-34.6714	127-52-05.3527	중부	286998.90	279082.82	142.145	옥종면 청룡리 산126	2023.02.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2	35-10-57.5650	127-46-35.6736	중부	287635.47	270735.04	156.547	청암면 상이리 936-3	2023.02.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3	35-10-58.4716	127-46-33.3217	중부	287662.94	270675.31	166.592	청암면 상이리 912-1	2023.02.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4	35-10-58.2073	127-46-30.7828	중부	287654.30	270611.14	176.725	청암면 상이리 1971	2023.02.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5	35-15-20.7979	127-37-49.6321	중부	295653.76	257373.66	461.898	화개면 용강리 산152	2023.02.1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6	35-15-21.1826	127-37-51.6034	중부	295665.93	257423.42	468.412	화개면 용강리 산151-5	2023.02.1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7	35-15-20.7754	127-37-52.5440	중부	295653.53	257447.27	474.855	화개면 용강리 산151-5	2023.02.1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8	35-11-19.5918	127-51-07.9762	중부	288370.74	277619.08	268.158	옥중면 위태리 산272-18	2023.02.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19	35-11-21.1581	127-51-07.9110	중부	288419.00	277617.02	261.254	옥중면 위태리 산278	2023.02.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0	35-11-19.4440	127-51-03.6641	중부	288365.25	277510.02	246.912	옥중면 위태리 산272-18	2023.02.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1	35-08-37.3829	127-42-20.2987	중부	283267.11	264304.17	31.675	악양면 측지리 1053-3	2023.02.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2	35-08-36.0711	127-42-20.9851	중부	283226.81	264321.83	35.253	악양면 측지리 1053-3	2023.02.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3	35-08-33.5771	127-42-22.0387	중부	283150.14	264349.05	36.990	악양면 측지리 1053-3	2023.02.2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4	35-04-27.2019	127-47-21.6819	중부	275614.24	271994.52	10.672	적량면 동산리 140	2023.02.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5	35-04-26.3167	127-47-22.8854	중부	275587.20	272025.23	9.635	적량면 동산리 1779-1	2023.02.2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6	35-04-24.7123	127-47-23.5541	중부	275537.89	272042.57	10.610	적량면 동산리 100-3	2023.02.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7	35-05-18.5194	127-47-00.2705	중부	277191.47	271439.62	79.358	적량면 동산리 486-3	2023.02.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8	35-05-17.6469	127-47-01.9226	중부	277164.91	271481.68	76.626	적량면 동산리 486-33	2023.02.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29	35-05-14.8151	127-47-00.7951	중부	277077.42	271453.81	63.722	적량면 동산리 486-34	2023.02.2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30	35-08-04.8491	127-50-40.2162	중부	282363.01	276967.69	389.846	횡천면 애치리 5-26	2023.02.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31	35-08-03.1533	127-50-38.0304	중부	282310.28	276912.79	372.320	횡천면 애치리 산23-4	2023.02.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32	35-07-59.6769	127-50-34.1573	중부	282202.31	276815.64	333.694	횡천면 애치리 산23-4	2023.02.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33	35-07-54.3406	127-50-31.1603	중부	282037.21	276741.16	303.227	횡천면 애치리 5-18	2023.02.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34	35-08-16.8030	127-46-31.4390	중부	282680.17	270666.51	243.753	청암면 명호리 1102	2023.02.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35	35-08-18.1797	127-46-32.5857	중부	282722.82	270695.21	238.770	청암면 명호리 1552	2023.02.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접	W4636	35-08-20.0624	127-46-31.2708	중부	282780.59	270661.47	253.604	청암면 명호리 1121	2023.02.27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고시 제2023-62호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입주희망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노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거약자에게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6. ~ 4. 28.(54일간)

2. 신청자격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순 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1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 청년 - 저소득층(수급자) - 장애인	·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재학(직)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2순위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귀농·귀촌인(입주 시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 이전)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3순위	- 일반인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주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 청 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귀농·귀촌인 : 타 시·군 동지역에서 이주하거나(공고일 현재 전입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정인 귀농·귀촌자

3. 신청방법 및 입주자선정방법

○ 접 수 처 : 예정 임대주택 소재 시·군

하동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880-2135)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공고기간 내 추천, 공고기간 경과 후 선착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3. 5. 1. 09시 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4. 입주가능(예정)일 : 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5.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주택 유형	임대가능 주택현황				희망임대료(만원)		비고
			구조	해당층	방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2019-하동-01	횡천면 원곡길 110-20 (남산리 170-2)	단독 주택	목조	1층	3	51.5	500	20	

6. 기타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해당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산정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해당 시·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자가 직접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 입주희망자(임차인)가 희망하는 임대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신청서에 희망하는 주택유형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 추가 모집 시에 별도로 안내하여 드림

7. 기타 문의사항 : 하동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880-2135)

8. 입주신청서식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붙임 :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신청서 서식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입주신청건물 : 2019-하동-01 (횡천면 원곡길 110-20)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신혼부부 증명서류 등

위 신청인은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공급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에 입주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세부 시행지침

2019. 3.



경 상 남 도
(건축주택과)

I 사업개요

1. 목 적

- 구도심 및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정비하여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3.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 사업물량 및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사 업 량(동)		49	9	20	20
사 업 비		733	133	300	300
재 원	도 비	366.5	66.5	150	150
	시·군비	366.5	66.5	150	150

II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근 거 :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량 및 사업비 : 20동, 3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 (동당 사업비 지원조건)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 (최대 15백만원)
-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 임대기간(2~5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임대주택 :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 (지원금액) 6백만원 이하 : 2년

6백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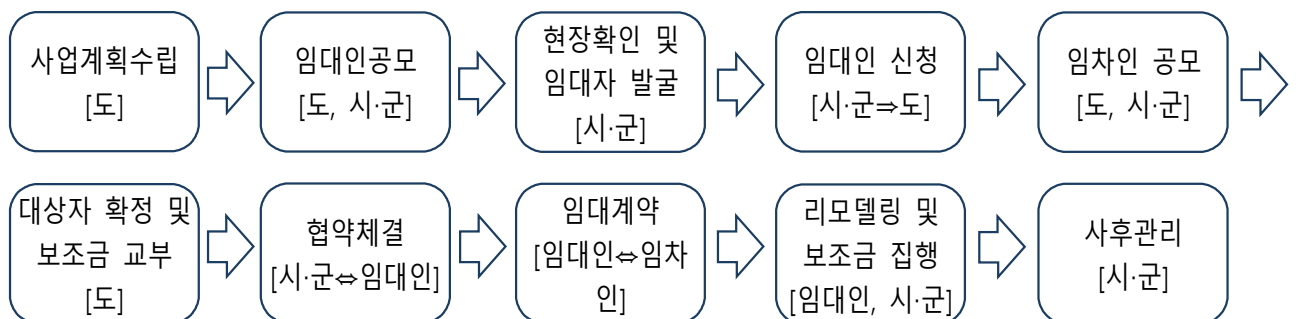
○ 공급방법

- 협약 체결 : 관할 시장·군수 ⇔ 임대자
- 임대차계약 : 임대자 ⇔ 입주자

○ 전·월세 반값 :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예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문의하여 파악된 주변 주택 전·월세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

○ 업무 흐름도



2. 임대자 공모 및 발굴

- 임대자 공모 : 공고문(안) [서식1]
- 임대신청 :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에 신청 [서식2]
- 현장확인
 - 입주 가능성(접근성 등), 규모, 시설물 노후도(활용 가능성), 소유자 의지(반값임대 여부 등), 5년 이내 재개발 여부 등 시·군 담당자가 해당 시설물 확인 [서식3]
- 임대기간 : 2 ~ 5년간
 - 임대차계약 시 2 ~ 5년간 임대기간으로 설정
 - 더불어 나눔주택 관리카드[서식5]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관리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사전 의견 조율
 -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군에 변경 요청 가능
 - 임대료는 해당 시·군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가 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임대인, 임차인과 3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임대자 유의사항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에 보고하여야 함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 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 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잔여임대기간은 월할로 계산하고 잔여일수는 버림)
 예시) 지원금 1,500만원을 받고 12개월 10일간 임대한 경우, 1,200만원 반환
 $\Rightarrow 1,200\text{만원} = [1,500\text{만원} - (1,500\text{만원}/60\text{개월} \times 12\text{개월})]$

3. 임차인 모집 [서식기]

- 임차인 모집 공고 : 공고안 참고
 -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가 원칙이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단, 입주자 자격요건은 1, 2순위에 한함)
- 모집 시 입주대상 자격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경합 시 추천
 - 1순위 : 신혼부부¹⁾,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²⁾, 수급자³⁾, 장애인⁴⁾
 - 2순위 : 차상위계층⁵⁾, 한부모가정⁶⁾, 귀농·귀촌인⁷⁾
 - 3순위 : 일반인(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시·군과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에 있어 규제대상이 아님
- 임차금액은 해당 시·군의 권고(안)을 따르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임대인, 임차인과 3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 기타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름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주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2) 청 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3)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한부모가정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7) 귀농·귀촌인 : 타 시·군 동지역에서 이주하거나(공고일 현재 전입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정인 귀농·귀촌자

4. 협약체결(시·군⇔임대자)

- 협약 체결 당사자 : 관할 시장·군수 ⇔ 임대자
- 주요 협약내용
 - 건물 및 소유자 현황, 목적 및 임대기간,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지원, 자부담 금액, 기타 특약사항 등
 - ▶ 협약서(안)[서식4]의 내용은 협의결과에 따라 실정에 맞게 협약조건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며, 분쟁예방을 위하여 협약 전 사업진행절차 및 조건 미 이행시 사업비 회수 등 전반사항 상세 설명

5. 사업시행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 예산과목 :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예산집행, 공사감독, 정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맞게 집행·시행
 - 대수선 등 건축행위 수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
 - 공사감독 : 시·군 담당공무원 임명
 - ▶ 감독자는 사업계획(리모델링 내용과 비용의 적정성) 검토, 시공감독,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집행·정산(실 집행금액)
- 공사 시행 시기 :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계약 완료 후

6.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주택별 관리카드[서식5] 비치(임대의무기간 동안)
- 반기별 입주 및 반값임대 여부 확인

7. 사업 주체별 역할

- 사업대상자(임대인)
 - 리모델링 공사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 및 증빙자료 제출
 - ▶ 공사계약서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

▶ 건축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수선 등 건축행위 수반시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시장·군수

- 임대 희망자 신청서 접수

- 임대예정 주택의 현장확인

< 현장확인 시 고려할 사항 >

- 구조의 안전성, 노후도(사용승인일 등), 방치기간
- 리모델링 계획의 적정성(규모 및 공사 후 임대가능 여부)
- 신청지 주변의 여건(교통, 기반시설 등)

- 입주 희망자 신청서 접수

- 임대인 협약체결

※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주변 주택 전·월세 시세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조정

- 시·군비 추경예산 확보

- 빈집리모델링 지도·감독

- 보조금 지급·정산

- 의무임대기간(2 ~ 5년) 동안 사후관리

- 차기 연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연중 수시 임대자 발굴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활용)

○ 경상남도

- 사업계획 수립

- 임대 희망자 모집 공고

-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 도비보조금 교부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유관기관 홈페이지 활용)

- 보조금 교부·정산

서식 1**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안)**

경상남도에서는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 .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이면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등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 * (지원금액) 6백만원 이하 : 2년
 - 6백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경상남도 및 시·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 도청 건축과 부서소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 신청기한 : 공고 후 해당 물량 소진 시까지

3.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 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 주택 신청 및 확정(시·군) → 임차인 모집 → 시장·군수와 건물주 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보조금 교부 → 빈집 리모델링 → 입주

4. 기타사항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가 원칙이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 예시)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 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월할 계산하여)하여야 함

5. 문의사항 : 건물 소재지 해당 시·군 건축 관련부서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위시 주택정책과	225-4215	김해시 공동주택과	330-3654	의령군 도시재생과	570-3534	남해군 도시건축과	860-3076	거창군 도시건축과	940-3604
진주시 주택경관과	749-8832	밀양시 건축과	359-5377	함안군 도시건축과	580-2715	하동군 도시건축과	880-2134	합천군 도시건축과	930-3432
통영시 건축과	650-5746	거제시 건축과	639-4674	창녕군 도시건축과	530-1386	산청군 도시교통과	970-736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11-4344	
사천시 건축과	831-3218	양산시 건축과	392-3032	고성군 건축개발과	670-2194	함양군 도시건축과	960-4163		

서식 2

임대신청서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신청서

건 물 현 황	소 재 지			건축 년도	
	연면적(m²)/층수	m² /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 선 계 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임 대 희 망 사 항	임대방법			임대료		
	전세	월세	전월세	전세	월세	보증금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예상 총 공사비 내역

서식 3

더불어 나눔주택 현장조사서

더불어 나눔주택 현장조사서

00시.군

접수번호 제 호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공가현황	소재지		용 도	
	연면적(층수)		건축면적	
현장조사결과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내용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무허가건물 제외,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가급적 제외)			
리모델링 가능여부				
건물상태 (노후도 등)				
예상 임대료 (소유자 요구 임대료)	※ 해당 시·군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가 되도록 임차료를 권고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입지, 노후정도, 규모, 임차인 가족수 등을 기록하고 임대료 계산			
주변시세 및 임대료 적정여부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2개이상 확인			
인근학교거리 (학생입주시)				
소유자 면담결과				
조사자 의견				

2019. . .

직 성명 (인)

(뒷면)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서식 4

협약서(안)

더불어 나눔주택 협약서(안)

대상주택현황

○ 건물현황

소재지			건축년도	
연면적(m ²)/층수			구조	
건물내부현황(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 소유자현황

소유자 인적사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택의 사용목적 및 임대기간

- 사용목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등을 위한 주택 반값임대
- 반값 임대기간 :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2 ~ 5년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시세 반값을 원칙으로 한다.
 -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총공사비 원(사업비 지원 원)
 - ※ 예산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최대 1,500만원까지)

- 공사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특약사항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 임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의무임대기간은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2 ~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 및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 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 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다.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잔여임대기간 월할 계산)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이주로 인하여 공실이 발생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임대기간의 연장 또는 지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협약서는 2부를 작성, 관할시장·군수와 주택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총 공사비 산정내역 1부.

2019. . .

00시장·군수 000(인)

000 (인)

점검 및 관리 일지

일 자 별

점검(관리) 개요

반기별 점검

서식 6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신청 접수부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신청 접수부

연번	신청인	소재지	연락처	사업추진 가능여부 (○,×)	비고(추진불가 사유 등)
1	김나눔				
2	도지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식 7

더불어 나눔주택 입차인 공모 공고(안)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노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거약자에게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19. . .

경상남도지사, ○○시장·군수

1. 신청기간 : 2019. 3. . ~ 00. 00.(30일간)
2. 신청자격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순 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1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 청년 - 저소득층(수급자) - 장애인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부부검증자료(예식장 계약서 등),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2순위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귀농·귀촌인(입주 시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 이전)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3순위	- 일반인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주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 청 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귀농·귀촌인 : 타 시·군 동지역에서 이주하거나(공고일 현재 전입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정인 귀농·귀촌자

3. 신청방법 및 입주자선정방법

○ 접수처 : 예정 임대주택 소재 시·군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위시 주택정책과	225-4215	김해시 공동주택과	330-3654	의령군 도시재생과	570-3534	남해군 도시건축과	860-3076	거창군 도시건축과	940-3604
진주시 주택경관과	749-8832	밀양시 건축과	359-5377	함안군 도시건축과	580-2715	하동군 도시건축과	880-2134	합천군 도시건축과	930-3432
통영시 건축과	650-5746	거제시 건축과	639-4674	창녕군 도시건축과	530-1386	산청군 도시교통과	970-736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11-4344	
사천시 건축과	831-3218	양산시 건축과	392-3032	고성군 건축개발과	670-2194	함양군 도시건축과	960-4163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공고기간 내 추첨, 공고기간 경과 후 선착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19. 00. 00. 00시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4. 입주가능(예정)일 : 2019년 00월 00일 이후부터(※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5.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모집 세대	임대 현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 층	방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00시·군 관리카드 NO.									

6.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해당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산정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해당 시·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7.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품질담당[☎ 055)211-4344]
해당 시·군 담당부서(접수처 안내 연락처 참고)

8. 입주신청서식 : 경상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서식 7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입주신청건물 : 해당임대주택 주소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신혼부부 증명서류 등

위 신청인은 경상남도과 00시·군에서 공급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하동군 고시 제2023-6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3. 04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25
2. 허가연월일 : 2023. 03. 04.
3. 점·사용의 목적 : 간선임도 개설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산 83-1번지 , 43㎡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산 76-1번지 , 91㎡
5. 점·사용의 기간 : 2023.03.07. ~ 2028.03.0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산림녹지과

하동군 제2023-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고시합니다.

- 아 래 -

점용자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 면적(㎡)	점용목적	유효기간
하동군수	하동읍 군청로 23	섬진강	화개면 덕은리 954	300	2023세계차엑스포 홍보깃발설치	2023.3.15. ~2023.6.30.

2023년 3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3-317호

하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등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 내용 :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예산편성 근거,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055-880-2254, FAX 055-880-2249, gkdud3853@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방지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군수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예산의 범위 내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355호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위치, 기능, 관리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산물유통과, 055-880-2733 FAX 055-880-6559, bluesky07@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33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집하·선별·저장·유통에 관한 사항
2. 차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전시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시설물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통센터 위탁운영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대표자)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법인, 단체)			
	주 소			
기 간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설 비	연 면 적		사용층수	층
	사용면적			m ²
	주요시설			m ²
	기 타			
위탁 신청동기 (취지)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 하

- | | |
|------------------|--|
| 첨
부
서
류 |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
|------------------|--|

[별지 제2호서식]

유통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법 인(단체명)		(☎)			
소 재 지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등록번호)				
기 간	당초	부 터		까 지	
	연장	부 터		까 지	
사 유					
기 타 사 항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 하

첨 부 서 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	--

하동군 공고 제2023-317호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초등학생에 한정한 입학축하금을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지원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하동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하동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조례 목적을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안 제1조)
 - 조례 상 용어의 뜻 정리 및 학생의 뜻 신설(안 제2조, 제2조3호)
 -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서 관내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변경(안 제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82, FAX 880-2159, e-mail lhh88@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하동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초등학교”을 “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등학교”를 “학교”로, “제2조제1호의”를 “제2조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와 고등학교 입학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초등학교”를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초등학교”를 “ 초·중·고등학교”로, “국내”를 “관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을 각각 “학생”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u>초등학생</u>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입학축하금”이란 <u>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u>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p> <p>2. “<u>초등학교</u>”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 제1호의</u> 학교를 말한다.</p> <p><신 설></p>	<p><u>하동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 <u>학생</u> ----- -----</p> <p>제2조(정의) ----- -----.</p> <p>1. ----- <u>학교에 입학하는</u> ----- <u>학생</u></p> <p>-----</p> <p>-----.</p> <p>2. ----- “<u>학</u> <u>교</u>”----- ----- <u>제2조에</u> <u>해당하는</u> -----.</p> <p>3. “<u>학생</u>”이란 「<u>초·중등교육법</u>」 <u>제13조에</u> <u>해당하는</u> <u>취학 의무 대상자와</u> <u>고등학교 입학대상자</u>를 말한다.</p>

3.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입학일 기준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생 략)

②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

-- 관내 초·중·고등학교-----

-----.

② -----
----- 초·중·고등학교-----
----- 관내 -----

-----.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학생 -----
----- 학생 -----

-----.

하동군 공고 제2023 - 374호

구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3. 3. 10. ~ 2023. 3. 29.(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3. 3. 10. ~ 2023. 3. 29.(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 정 사 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²)		
구곡 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37-5 일원	침수 위험지구	나	65,378	- 기존제방고 부족으로 인한 월류 침수피해 발생 - 제내지는 주거지 및 농경지(논,밭,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월류 발생시 침수피해 예상 - 현재 구곡배수펌프장의 펌프용량 대비 유수지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펌프장 시설 능력 부족등으로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위험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구곡 지구	2024년 ~ 2027년 까지	17,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440m • 보축 176m • 교량 재가설 2개소 • 보 및 낙차공 2개소 • 배수펌프장 증설 및 유수지 확장 1개소 • 배수시설 1,030m 	

※ 구체적인 사업예정 시기, 사업예산 및 내용은 예산(국비) 지원 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건설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기한 : 2023년 3월 29일 까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건설교통과
- 팩 스 : 055) 880 - 2115

바. 문의처 : 하동군 건설교통과 ☎ 055) 880 - 2513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질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성토 및 정지 작업 등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붙 임 1.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예정) 정비사업 현황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부. 끝.



자 연 재 해 위 험 개 선 지 구 정 비 사 업
타 당 성 조 사 및 기 본 계 획 수 립 용 역

구 곡 지 구

2023. 3.



하 동 군

지구현황

- 지구명 : 구곡지구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37-5 일원
- 유형/등급 : 침수위험지구 / "나"
- 지정면적(안) : 65,378㎡
- 재해위험 원인
 - ▶ 양포천(지방하천)인근에 위치하고 계획홍수위보다 지대가 낮아 외수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구 내 위치한 배수시설(구곡배수펌프장)용량 부족으로 주변 농경지 및 주거지(구곡마을), 건물 등의 침수 발생 우려
 - ▶ 구곡배수펌프장의 규모는 75hp × 600mm × 2대(수중) 200kw로 시설능력 검토 결과 펌프용량(Q=120 m³/min) 대비 우수지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펌프장 시설 능력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음

관련계획

-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하동군, 수립중)
 - ▶ 하천재해(양포지구) 관리지구 선정
- 양포천 하천기본계획(2012, 경상남도)
 - ▶ 양포천(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반영

침수 피해현황도

- 침수면적: 6.54ha(주거지 1.21ha, 농경지 5.33ha)



❏ 피해사진



❏ 사업계획

○ 사업내용

지구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공 종	금 액	총 사업비		
구곡지구	· 축제 440m · 보축 176m · 교량 재가설 2개소 · 보 및 낙차공 2개소 · 배수펌프장 및 우수지 1개소 · 배수로 정비 1,030m	제방공	1,211	17,954	2024 ~ 2027 (4년)	
		구조물공	12,464			
		보상비	1,134			
		조사설계비	684			
		기타 부대공	2,461			

○ 위치도



하동군 공고 제2023-385호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2. 제안 이유 :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채용절차 등의 개정을 통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전심사 시기 조정 및 채용절차 개선, 별지 서식 신설·개정
4. 의견 제출 : 이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하동군 기획행정국 행정과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행정과

- 전화 : 055)880-2165, FAX : 055)880-2159
- 이메일 : miri7956@korea.kr

- 붙임 1.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6월말”을 “8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월말까지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절차 및 기간은 제3항과 동일하게 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또한 같은 조에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하동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전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제8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록구비서류”를 “제10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록 구비 서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사전명령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시간외 근무 사전명령서”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로 한다.

제14조 중 전단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부”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부”로 하고, 후단에 “대체 할 수 있다”를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별지 제12호서식의 휴가원”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휴가원”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30조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원”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퇴직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별지 제17호서식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303호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8.

하 동 군 수

1. 개 요

○ (사업규모) 23대 지원 (23백만원)

☞ 대상자 선정 완료 후

① 잔여 사업비 발생 시, 별도 추가 공고 없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선정·지원

② 사업비 부족 시(사업비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 기선정자 중 취소자 발생 시 차순위 순서대로 선정·지원

- 추가 예산 확보될 경우, 기접수자 중 차순위 순서대로 우선 선정·지원 후 추가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선정·지원

○ (지원금액) 1백만원/대(정액지원)

○ (접수기간) 2023. 2. 28.(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자 선정) 2023. 3. 17.(금)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등기우편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LPG화물차 담당

- 방문접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지원대상)

1) 하동군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자진말소)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하는 차량소유자

* 경유차 :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2)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 위임장 제출)

3) '22년 11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에 한함)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22.10.31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는 신청 불가

4)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5)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 지난 경우에 한함

6) 하동군 내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선정기준 및 방법) 일괄 접수 후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1순위)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2순위) ▶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동일 연식은 제작일자 오래된 순으로 선정)

(3순위) ▶ 차량 제작일자가 동일한 경우 총중량 큰 순

조기폐차 기준(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4등급의 경우 출고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등급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선정일 기준 하동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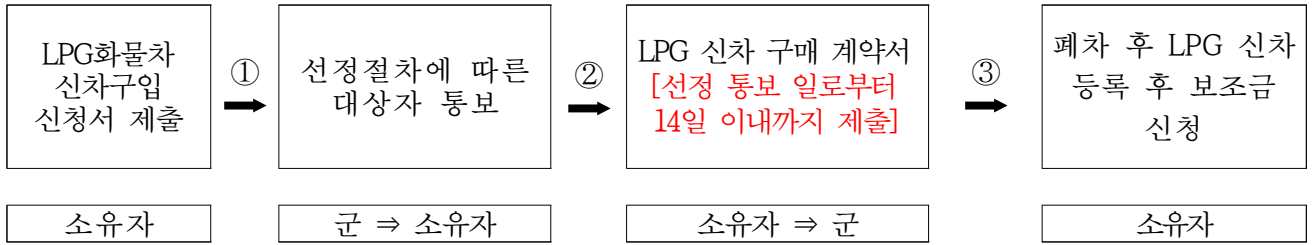
◆ (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대상자 통보일 이후 검사) '정상가동' 판정 차량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2. 지원절차



★ 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폐차

3. 제출서류(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2)
-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폐차 대상 경유차량)
- ④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 LPG 화물차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조금 청구 서류: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통)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붙임3)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경유 자동차) 1부

③ 자동차 등록증 사본(LPG 신차) 1부

④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추가 제출)

- 지원신청 당시 차량 소유자 외의 소유자의 위임장(붙임4)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취소 및 차순위 변경 ※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계약서등 증빙자료 제출 시 제출기한 연장 가능하므로 제외됨)

4.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해당 금액과 발생이자를 환수함.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2) 의무운행기간(2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출 또는 말소할 경우
 - ※ 의무운행기간은 신차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 3)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4)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환수대상 보조금 및 발생이자는 15일 이내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관련규정 및 하동군 유권해석에 따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사업이므로 자동차 말소등록증 상 “수출말소” 또는 “차량초과말소” 는 보조금 지급되지 않음
- 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055-880-2565~7)

- 붙임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4. 위임장 (공동명의 차량 폐차 시)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6. 포기서

[붙임1]

접수	환경보호과 - (2023. . .)
----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용본거지)		
	연락처		

폐차(예정) 경유차	차량등록번호	연료 경유	
	차명	차종(정원)	등록연도

조기폐차 대상자 여부(O,X)	조기폐차 대상이 아닌 경우	<input type="checkbox"/> 경유차 일반폐차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차량
---------------------	----------------------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개인) 신분증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3]

접수	환경보호과 - (2023. . .)
----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연료 LPG	
	차명	차종(정원)	제작연도	
말소 차량	등록번호		말소일자	
<p>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수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붙임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성명

(서명)

[붙임6]

포 기 서

① 사 업 명		20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 청 인 (대표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연 락 처		
신 청 내 용	⑥ 차 량	차 명	
		등록번호	
	⑦ 포 기 사 유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306호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8.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 사 업 량 : 2대

☞ 잔여사업비 발생 시, 별도 추가 공고 없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선정·지원

3. 사 업 비 : 14백만원

4. 지원금액 : 700만원/대 (정액지원)

5. 지원대상

○ 하동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포함, 차령초과말소 제외)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

○ (특례조항) 기존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선정 가능(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하여야 함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2종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총 6종

《 지원대상자 제외》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신청일 기준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직영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시설의 통학차량의 용도가 ‘관용’ 인 경우

6. 우선순위 및 선정방법

- 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신차 LPG차 전환할 경우(㉠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 ㉡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 ㉢ 차량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
- ② 폐차 없이 신차 LPG차 구입할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

7.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①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3. 2. 28.(화)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등기우편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LPG차 담당
 - 방문접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신청서류

공통서류	법인
① 지원신청서 (붙임1)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공통서류+④】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 등은 붙임4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

②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3. 3. 10.(금) 예정

③ 보조금 지급 신청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후 4개월 이내
- 구비서류

공통서류	법인인 경우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4)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신차) ③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신차)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⑤ 보조금수령용 본인(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⑥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붙임5)	【공통서류+⑦】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함

④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자 취소 발생 시 신청자 중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발

8.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 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 버스로 신고 가능한 시설 외 매수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LPG어린이통학차량은 2년간 일반자동차로 튜닝(구조변경)불가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뭇 또는 다뭇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9.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3. 2.)』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055-880-2565~7)

-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3. 위임장
 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6. 포기서

[붙임1]

접수	환경보호과 - (2023. . .)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 자동차*	차명 등록번호	차종** 제작연도	연료 통학차여부 (O, X)
<p>*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폐차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하동군수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법인인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3]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감도장 인)
	생 년 월 일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임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호 자동차에 대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 및 청구,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2. 위·수임자 신분증 사본 각1부

2023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신분증 사본 제출

[붙임4]

접수	환경보호과 - (2023. . .)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정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성명

(서명)

[붙임6]

포 기 서

① 사 업 명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 청 인 (대표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연 락 처		
신 청 내 용	⑥ 차 량	차 명	
		등록번호	
	⑦ 포 기 사 유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326호

2023년 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하동군의 문화향상, 체육발전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각 부문에서 군민에게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하여 하동군 군민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을 참고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부문

- 문화부문: 문학, 음악, 미술, 연예, 교육, 언론, 건축 및 기타 문화예술분야
- 체육부문: 체육공로, 체육지도, 체육진흥, 경기 및 기타 분야
- 지역사회개발부문: 새마을사업, 농어촌계몽 및 사회개발사업, 선행, 효열 및 기타 지역사회개발 분야

2. 후보자 자격

- 하동군의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하동군 태생이거나 등록기준지가 하동군인 자
 - 하동군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 하동군 관내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3. 추천권자

- 부문별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
- 거주지 읍면장

4. 후보자 공적기간: 후보자 공적의 전체기간

5. 추천기간: 2023. 3. 3.(금) ~ 3. 23.(목)/ 20일간

6.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 공적조서 1부
- 이력서 1부
- 사진(상반신 칼라 명함판) 1매
-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적증빙서류 1부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에 한함

7. 접수처

-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우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하동군 군민상 심사위원회
- 연락처: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13)
- 접수마감: 2023년 3월 23일(우편 송부 시 소인 날짜 기준)

8. 심사 및 시상인원 확정

- 하동군 군민상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후 분야별 1인 선정
(단,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 제외)

9. 시상일: 2023. 4. 14.(금) -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시

10. 기타사항

- 추천서식은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s://www.hadong.go.kr>) 또는 기획예산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조사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기획예산과(☎ 880-2013)로 문의 바랍니다.

2023. 3. .

하 동 군 수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추천부문		주민등록번호	

2. 공적개요

위 사람을 2023년도 하동군 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3. . .

추천자 직위: _____
성명: _____ (직인)

하동군 군민상 심사위원장 귀하

-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이 력 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년 월 일	공적사항	비고

붙임 공적증빙서류 각 1부

상기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

2023. . .

추천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				사 진 (4cm×6cm)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직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학 력 (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				
년 월 일	학 력 사 항	전 공 분 야	비 고	
경 력 (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				
년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상 별 (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첨부)				
년 월 일	수 상 종 류	공 적 사 항	비 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				
2023. . . .				
직 위:		성 명:		(인)

하동군 공고 제2023-354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공고 제2023 - 15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가 모집 공고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개요】

- ▶ (기 간) 2023. 5. 4. (목) ~ 6. 3. (토) / 31일간
- ▶ (장 소) 하동군(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박물관 일원)
- ▶ (주최/주관) 경상남도, 하동군 /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주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한국관광공사, Kotra
- ▶ (주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2023년 3월 일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장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전시관 기간제 채용 추가모집
- 모집기간 : 2023. 3. 8.(수). ~ 3. 20.(월) / 13일간
- 모집인원 : 2명
- 모집분야

장소	근무예정지	분야	담당업무	인원
하동스포츠 파크 (제1행사장)	월드티아트관	해설	· 전시관 해설 · 전시물 보호 · 관람객 안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상황 보고 등	1
	웰니스관	운영	· 전시관 운영, 전시물 보호 등 · 전시관 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람객 안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상황 보고 등	1

※ 인력배치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간 : 2023. 5. 4.(목) ~ 6. 3.(토) / 31일간
- 근무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근무자는 사전 관별 상황 점검 보고 및 운영 준비 (회장운영시간 10:00~18:00)
 - 근무일정 및 시간은 엑스포 조직위와 협의하 탄력적으로 근무
- 보 수

항목	단가	급여	비고
총급여		3,232,360원	31일 만기 출근시
기본급	76,960원(일)	1,616,160원(76,960*21)	
휴일수당	115,440원(일)	1,154,440(76,960*1.5*10)	
주휴수당	76,960원(주)	461,760(76,960*6)	

※ 근무시간 · 일정에 의해 총급여는 소정 변동될 수 있음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근무장소 : 1행사장(월드티아트관, 웰니스관)
 - 사전 조직위 사무실 출퇴근 확인 및 지시 사항 수행
 - 식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

3 응시자격

○ 일반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요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요건

- 관련 직무 관련된 유사 경력 등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차 관련 전시해설분야 해당 부분에 관련 지식이 풍부하며 그와 관련된 민·관 수여 자격증(수료증, 이수증 등) 제출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 심사	1차 합격자 발표	면접 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사전 교육	현장 배치
' 23. 3. 8. ~ 20.	3. 21.	3.22.(개별통보)	3.28.(예정)	3.29.	3.31.	5.4.~6.3

○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3. 8.(수) ~ 23. 3. 20.(월) 주말,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원탑길6 전시연출부(직접제출 및 우편제출 등)
tmvkd132@korea.kr(이메일 제출)

-공통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함함)

-해당자 제출서류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바. 관련 경력증 사본 1부.

○ 서류심사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서면 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연락

- 2차 면접전형 : 근무능력, 의욕, 건강, 의사소통력, 업무지식성 등 종합적 심사

* 대면면접으로 실시하며 3. 28(화 - 예정) 엑스포조직위 사무실 14:00까지 참석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 통보 후 일정 재조정

○ 최종합격자 개별알림 : 적격자 없을시 재공고

○ 사전교육

- 각 관 PPT 자료 배부 및 각종 차 관련 서적, 사전숙지 사항 등

- 실제 현장을 가정한 모의상황 재현 및 기타 유의사항 전달 등

- 관람객 동선 안내, 안전사항 전달 등

○ 현장배치

- 전시관 실시간 상황 점검 및 보고, 전시관 운영·안내 등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보 후 응시원서 기재 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신원조사,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정상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접수번호		채용(과정)명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실거주지 기준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		
	이메일				
전공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명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자격·면허 <small>해당자만 작성</small>	자격증명		취득일	취득기관	
경력 <small>해당자만 작성</small>	기간	직장명	직위	담당업무	
<p>2023하동군세계차엑스포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top: 10px;">2023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10px;">하동군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응시표	성 명		응시번호	접수순서기준
	생년월일		채 용 명	
	접수일시	23년 월 일 시	접 수 자	전시연출부 <small>(서명또는인)</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심사 : ' 23. 3. 21. ○ 면접 심사 : ' 23. 3. 28. ○ 합격자발표: ' 23. 3. 29. ※ 향후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응시자에게 사전에 안내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서식】

자기소개서

- 분량은 A용지 1매 내외로 작성
- 작성시 출신지, 고향, 친인척 관계 등 직·간접적 언급금지
- 필체 작성 또는 친필로 자유롭게 기술

지원동기·이유

--

경력사항 및 연관된 경험

--

마음가짐 및 하고 싶은 말

--

2023년 월 일

작 성 자 : (인)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장 귀하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 · 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자격 · 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평가 관련 학력, 경력, 자격 · 면허, 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3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 · 여권 · 운전면허 · 외국인등록 · 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 채용평가 관련 학력, 경력, 자격 · 면허, 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3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4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 하동군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노동자 채용심사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응시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응시자께서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서명 또는 인)

【제5호 서식】 하동군세계차엑스포 조직위 해당

기간제채용평가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주소					
자격증					
평가사항					
요 소	질문사항			점 수	
지원동기(20)					
업무지식성(30)					
근무능력성(20)					
의사소통력(10)					
상황판단성(20)					
총 점					
<p>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 함.</p> <p style="margin-top: 20px;">2023. .</p> <p style="margin-top: 20px;">직책 : 평가자 : (인)</p>					

하동군 공고 제2023-366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 하동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하동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3. 3. 9.
 - 제공받는 자 : (주)코나오정보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23. 3. 10. ~ 2023. 3. 26. (18일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3. 3. 9.

하 동 군 수